

안양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제정	1996. 3. 20	훈령	제288호	
개정	2004. 1. 31	훈령	제436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514호(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2009. 1. 30	훈령	제515호(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4. 1. 17	훈령	제60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10. 20	훈령	제659호(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 정비 규정,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소속공무원의 연구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안양시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콘도이용대상자)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 31, 2009. 1. 30, 2009. 1. 30, 2016. 10. 20, 2020. 1. 31>

1. 안양시소속 공무원
2. 안양시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
3.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중 시장이 인정한 자

제3조(주관부서) 콘도의 운영과 관리의 주관부서는 안전행정국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4. 1. 17>

제4조(이용기준) ① 콘도의 이용은 1인당 연중 2회 3박(상·하반기 각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순위에 의거 가급적 하위직 직원중 미사용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다만, 부서별 업무연찬 및 직원동호회의 이용일은 신청자의 이용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 31>

② 콘도 이용시에는 반드시 콘도이용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고, 향후 콘도 사용을 제한한다. <개정 2004. 1. 31>

③ 콘도이용시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우선순위
2. 일반순위

제5조(신청방법 및 사용절차) ① 콘도이용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예약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름성수기(7. 10~8. 20): 30일전
2. 겨울성수기(12. 20~1. 31): 30일전
3. 주말: 3주전
4. 평일: 10일전

② 주관부서는 콘도이용 신청서는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회원카드를 수령하여야 하며, 콘도 이용후 즉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	비 고
부서별 업무연찬	신청기간에 의함	계획서 제출
포 상 휴 가	2박 3일 이내	
부모동반 효도휴가	"	
신 혼 여 행	3박 4일 이내	
가족동반 휴가	2박 3일 이내	신청순에 의함
일 반 이 용	"	"

제6조(신청의 취소) ① 콘도이용이 확정된 공무원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을 못한 경우나 이용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취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사전 통보없이 콘도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회 이용으로 간주하며 다음 순위 배정시 최하위 순위에 배정한다.

제7조(경비부담) 콘도이용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가 부담하고 추가비용(인원초과, 부대시설 사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 1. 31>

제8조(이용권의유지.관리)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콘도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콘도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31 훈령 제43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30 훈령 제514호,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시사역인부”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9. 1. 30 훈령 제515호,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원외상근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 1. 17 훈령 제60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6. 10. 20 훈령 제659호,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공무원휴양시설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를 “청원경찰

안양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규정

및 공무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20. 1. 31 훈령 제706호,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콘도미니움이용신청서

소 속		
직		
성 명		
이 용 대 상	이 용 목 적	
	이 용 콘 도	
	이 용 지 역	
	이 용 기 간	
	이용인원(동반자)	
<p>위와 같이 콘도이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p>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콘도미니엄이용취소(변경)신청서

소	속	
	직	
	성	명
이용 대상	이 용 목 적	
	이 용 콘 도	
	이 용 지 역	
	이 용 기 간	
	이용인원(동반자)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콘도이용을 취소(변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양 시 장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콘도미니움이용관리대장

연 번	신 청 인			이 용 대 상				이 용 목적	이 용 카드 번호	콘 도 별 이용잔여일수	결 재			
	소 속	직 명	성 명	콘 도 명	지 역	기 간	인 원				담 당	팀 장	과 장	국 장
										· 성수기: · 주 말: · 평 일:				
										· 성수기: · 주 말: · 평 일:				
										· 성수기: · 주 말: · 평 일:				
										· 성수기: · 주 말: · 평 일:				
										· 성수기: · 주 말: · 평 일:				

